

光海君朝의 文藝振興 政策

강 혜 영*

〈목 차〉

I. 서 론	IV. 서적 수집
II. 독서당의 정비	1. 국내 수집
III. 서적복구정책	2. 국외수집
1. 서적수집정책	V. 서적 편찬과 간행
2. 서적교인도감	1. 서적 편찬
3. 주자사업	2. 서적 간행
4. 포상	VI. 결론 및 요약
5. 서적보관	Abstract

I. 서 론

광해군은 1608년 2월에 즉위하여 1623년 3월에 반정으로 폐위된 임금으로 그가 재위하였던 15년간은 暴政이었다고 일컬어진다. 광해군은 극렬해지는 당쟁 속에서 즉위한 다음 당쟁의 폐해를 알고 억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오히려 당쟁에 휩쓸려 大北派의 흥계에 빠져 同腹형인 臨海君, 이복동생인 永昌大君, 인목대비의 아버지인 金梯男 등을 역모로 몰아죽이고 母后인 仁穆大妃를 西宮에 유폐시키는 등 패륜행위가 많아졌으며 정치도 문란해져 폐위된 임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광해군의 재위15년간은 임진란의 직후로 서적의 손실이 막대하였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으며 국가 재정도 어려웠으나 史庫를 정비하고 서적을 편찬하고 성지와 병기
를 수리하고 號牌를 실시하는 등 내치에 힘썼고 밖으로는 국경방비와 외교에
힘써 後金이 明을 침범하자 明과 金 양나라에게 미움을 사지않는 양단정책으
로 난처한 외교를 능숙히 처리하는 등 내정과 외교에 비범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두드러진 功過로 평가되면서 반정으로 끝을 내린
불행한 광해군이 그의 재위동안 문예진흥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꾀했는지를 살
피고자 함이 목적이다. 즉, 임란 이후의 모든 제도와 물력이 황폐해진 시기
에 그가 문풍 진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떠한 서적 정책을 꾀고
수행하였는지, 어떤 종류의 서적들이 수집, 편찬, 간행되었으며, 그 배경은 무
엇인지 등 전반적인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光海君日記를 비롯한 기타 史料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지만
폐위된 임금이므로 그에 관한 사료의 보존이 충실하지 못한 것이 애석한 점
이다.

II. 독서당의 정비

임진란이 종식된 후 여러 가지가 점차로 예전대로 회복되고 있으나 인재
양성의 일은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자 당시의 대
제학인 柳根이 폐지되었던 독서당을 부활하여 인재양성의 제도로 활용할 것
을 건의¹⁾하여 광해군 즉위년(1608)에 재설되었다.

1) 光海君日記, 即位年 9月 戊戌, “大提學柳根啓曰 經變以後 凡百規模 稍稍復古 獨儲養人
才一事 尚未遑焉 國家設賜假讀書堂 主文之臣會同禮曹吏曹堂上 擇擇儒臣中有才望者 分
番賜假 專讀書 甚盛舉也 十七年來 無復是規 雖有英才 其能以讀書講學自任者鮮矣 獎掖
成就 非可以朝令而夕有效之。祖宗朝培養人才之美意 誠不可廢 而不行 讀書堂舊基 在有
東湖 而漢江別營 今方虛棄 姑於此處 設爲讀書之所 未爲不可 將此議于大臣施行如何
傳曰依啓”

본래 賜假讀書制는 世宗 8년(1426)에 年少有才者에게 사대문서를 능히 작성할 수 있고 使臣에 적합한 博學하고 文章이 있는 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틈(假)을 주어 국비로 독서에 전념²⁾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성종조에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어 독서당이라는 상설적인 국가기구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조에 이르러 폐지되었다가 중종조에 사류의 기세가 피어나자 다시 복구되었다. 그러나 임란때 왜군의 병화에 걸려 소진되었으며 광해군에 이르기까지 堂選도 중지되었던 것이다.³⁾

독서당의 재설치에 대한 논의는 그 취지에 있어서 찬동을 받았으나 설치장소는 다소간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독서당의 재설치를 건의하였던 柳根은 賜暇讀書堂의 장소를 폐기된 한강 별영으로 하자⁴⁾는 의견을 내었다. 이에 대해 右議政 沈喜壽는 물력이 부족했던 당시의 상황으로는 한강 별영이 심히 어그리져 있으므로 좋지에 수리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서운 부근의 사찰에 서식하도록 하여 왕래하면서 학업을 단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어 광해군도 그의 의견을 따르도록 동의하였다. 그러나 柳根은 세종조에서 賜暇讀書의 규정이 시작되었던 중종10년(1515)에 독서당이 조정과 저자에 불어 있어 글을 읽는 아득한 장소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하여 東湖에 정하기 까지의 독서당의 연혁을 말하면서 양식을 절까지 운반하기 어려운 점과 경비를 절약할 것 등을 들어 간곡히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하였던 바 한강별영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⁵⁾

2) 金庠基, “讀書堂(湖堂)考,” *慶檀學報*, 17輯(1955. 12), p. 3

3) 上揭論文, p. 11

4) 光海君日記, 即位年 9月 戊戌, “大提學 柳根啓曰... 讀書堂舊基 在於東湖 而漢江別營 今方虛棄 姑於此處 設爲讀書之所 未爲不可”

5) 上同, 即位年 9月 己亥, “禮曹啓曰 讀書堂 復設事 議于大臣... 依祖宗朝舊例 姑今棲息於京山寺刹 猶不廢往來鍊業 未知如何 伏惟上裁 傳曰 書堂復設 似涉未遑 姑依右相議”

6) 上同, 即位年 11月 甲辰, “大提學柳根啓曰 賜暇讀書之規 創自世宗廟 許令讀書山寺, 厥後至成廟朝 以儒臣不宜與縉徒混處 乃以龍山廢佛寺爲讀書之所... 中廟中興, 嶸乙亥 以堂迫近朝市 不合靜處 設書堂于東湖 雖給公 連鑽山寺 亦恐難便, 其他各該司進 排之物及守直之軍 簡約磨鍊 則恐或便當, 更讓大臣從長施行何如 議于大臣從”

賜暇員 數는 대개 10명이하로 하는 것이 통례⁷⁾였으나 광해군조의 복설초기인 즉위년(1608)에 12명의 독서당 관원을 선발하였으니⁸⁾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대단히 의욕적인 선발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사정이 매우 곤궁하였던 것은 광해군 원년(1609) 10월에 사간원에서 “지금은 난리를 겪은 뒤라서 국고의 비축이 바닥났으므로 하루, 한 달치의 경비도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처지인데 다시 독서당을 설립하여 수요되는 온갖 물품을 모두 마련하게 하는 것은 부지해 나갈 수 없는 방도입니다. 더구나 전에 없었던 흥년을 만나 公家. 私家의 재물들이 고갈되어 전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과 몇 달 전에 재설한 독서당을 혁파할 것을 건의⁹⁾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처럼 독서당은 재설된 직후 경제적인 이유로 곧 혁파되고 독서당원으로 뽑힌 사람들은 집에서 독서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해 11월 당시의 대제학이었던 이정귀는 문풍을 승상하고 장려하는데 관계되는 독서당이 재설되자마자 독서당원만 뽑은 채 곧 혁파되는 것은 보고 듣는 여러 사람들이 낙망할 일일 뿐아니라 한강의 별영도 이미 수리하여 서적도 많이 모았으며 器具도 대략 갖추었으므로 최소한의 관원을 배치하여 독서당의 운영을 재개할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얻고 있다.¹⁰⁾

광해군 7(1615)년 5월에 다시 朴鼎吉, 孫偶, 柳活, 柳希發, 柳希亮, 高用厚,

7) 金庠基, 前揭論文, p. 22

8) 上揭論文, p. 24

9) 光海君日記, 元年 1月丙辰, “司諫院啓曰 湖堂設置 培養人材 其蓋實非偶然 而國家全盛之時 物力殷當 其於供億需應之際 雖有許多 費之弊 固無難繼之患矣 今則經亂之後 國儲板蕩 日月經費 猶患竭 而復立書堂 凡百所需之物 一皆辦出 已非可支之道 况值大無之年 公私赤立 比前尤急 此正省減裁損以除一分之弊 而賜暇之日 亦異於平時無事之日 不得專意讀書 徒爲虛局各該司 進排之物盡 歸於下吏之手 物情深以爲未便 請被抄之員 在家讀書 書堂姑爲革罷”

10) 上同, 元年 11月辛卯, “大提學李廷龜啓曰 書堂被抄人員 在家讀書 書堂姑爲革罷 以諫院所啓允下矣... 事係崇獎文風 當初不爲復設則已 旣設後旋即環罷 觀聽甚爲落莫 誠可嘆也. 只留書寫一人 書吏三人 以備使喚... 漢江別營 旣已修葺書籍多集 器具粗備. 令其遺存典儀 仍爲守直 以存羊之意 如何 傳曰依啓”

朴弘道, 鄭遵, 任性之, 李偉卿, 金蓍國, 柳淪을 독서당원으로 선발¹¹⁾하였다. 또 그해(1615) 7월에 賜暇讀書문신들의 勸獎事目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는 전의가 윤허되고¹²⁾ 독서당 관원의 수연 참석에 관한 기록¹³⁾에서 볼 때,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하에서도 賜暇讀書制가 계속 시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특히 성종, 중종, 명종 등 역대 우문의 임금은 독서당원을 龍遇하여 자주 宮을 賦與하였던 점¹⁴⁾에 비추어 볼 때 광해군이 독서당원을 수연에 참석시켰던 기록에서 그가 문신을 존중하였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독서당의 운영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던지 광해군 8년(1616)에는 독서당원들의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학이 독서당의 관원들이 선발된 이후에도 외방에 보임되기도 하고, 또 결원의 보충이 신속히 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여 인재 양성의 취지가 흐려지는 것을 걱정하여 독서당의 권장을 전의¹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9년(1617) 10월에는 독서당원이 대개 12명 이상일 때는 二番制를 시행하는 관례에 따라 二番制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관원의 결원이 많으므로 하나의 番으로 하자는 전의가 대제학의 의견¹⁶⁾으로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독서당원의 보충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上同, 7年 5月 壬子, “傳曰 讀書堂官員 極擇以啓 吏曹以朴鼎吉孫個柳活柳希發柳希亮高用厚朴弘道鄭遵任性之李偉卿金蓍國柳淪抄啓”

12) 上同, 7年 7月 甲戌, “讀書堂官員 以大提學李爾瞻意啓曰 初八日爲始 當番官員 使之下直出去 且賜假讀書 貴在著實 既有逐朔製述書啓之規 每朔所讀之書 亦可依此施行 與製述一時書啓 考其勤慢 以爲賞罰 殺無作報之患 答曰允 平時製述度數書啓”

13) 上同, 8年 9月 戊子, “傳曰 讀書堂官員 使入侍壽宴”

14) 金庠基, 前揭論文, p. 26

15) 光海君日記, 8年 10月 甲子, “讀書堂以大提學意啓曰 書堂復設之意 惟在於儲養人材 以爲國家之需 而當初被抄十二只 或自辭遞 或陞堂上 所女之九只 猶且以玉堂臺官 雖在賞番 不得肅拜出去 其於勸獎之道 亦爲欠缺 而今者新授南原府使高用厚 以有才學年少人無故補外 殊違國家預養之本意 請高用厚遞付京職 仍帶書堂 殺專做業 以飭成就 傳曰仍送”

16) 上同, 9年 10月 辛亥, “讀書堂官員 以大提學意啓曰 當初書堂被抄十二只內 每一年半分六朔 各六只 分作左右番 歷後或辭遞 或陞堂上 或在喪 或補外 右番只有左郎柳淪 右番只有副教理鄭遵 殊其孤陋 請合爲一番 以資成教 傳曰允”

당시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 하에서 다시 복구되어 존속하였던 독서당은 광해군 14년(1622) 2월 27일 癸巳에 끝내 혁파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독서당은 詞臣을 양성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태평시대를 장식하는 도구이나 지금은 군비가 많이 필요한 때이며, 일이 많고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일이 안정될 때까지 폐지한다.¹⁷⁾는 것이었다.

III. 서적 정책

광해군조에서 행해진 서적정책은 우선 전반적인 수집정책을 살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전란으로 산일된 서적을 집중적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한 것으로 書籍校印都監의 설치, 鑄字의 완성, 서적 수집의 공로자에 대한 후한 포상, 서적의 분산 보관을 들 수 있다.

1. 서적 수집 정책

광해군조에서 행해진 서적 수집의 방안은 광해군 원년(1609) 8월에 侍講院에서 “侍講院에 소장된 서적이 적어 간혹 참고하여 열람할 때 충분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책은 각도의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은 중국에서 사오도록 하자”¹⁸⁾는 견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서적의 출판, 국내에서 서의 수집과 중국에서의 서적 수입을 들수 있다.

17) 上同, 14年 2月 癸巳, “傳曰 當此軍興多事經費乏絕之時 祭享御供之外 凡所以省費之舉 宜無所不用其極 讀書堂之設 乃所以儲養詞臣 貨節太平之具也 亂後久廢 復設有年 鋪陳供億及下人料布之數 足當一都監之費 適今官員 只有三人 皆是老成於詞翰者 不必分番鍊習讀書堂 姑限事定停廢 使之在家溫習”

18) 上同, 元年 8月 壬申, “且院中書籍 所儲不敷 或於考閱之際 多有未廣之歎 我國所刊之冊 移文于各道監司 使之印送 我國所無之書 則貿於中華之意 爲敢啓 傳曰 依啓”

국내에서 서적을 수집할 때는 완질만이 아니라 逸書까지도 구하려고 노력한 것을 살필 수 있다. 즉, 광해군 2년(1610) 3월 乙丑에 경상 감사에게 내린 훈시 중에 “우리나라의 서적 중 홀륭하여 불만한 것을 도내에서 탐문하여 구하는 대로 올려보내는 데 완질이 아닌 경우도 험의롭게 여기지 말 것¹⁹⁾”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서적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서적을 우선적으로 인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²⁰⁾ 광해군의 이러한 의도는 서적 간행에 반영되어 광해군 4년(1612)에 이미 高麗史, 龍飛御天歌, 輿地勝覽 등의 책이 간행되었다.

2. 書籍校印都監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는 임진란으로 인하여 서적 손실이 매우 커었던 시기로 서적 산일의 정도와 범위는 국가적인 종대사인 실록의 편찬에 근거할 자료까지 없어졌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선조의 실록을 편찬하기 위하여 춘추관에서 史局의 설치를 건의하면서 史冊이 모조리 없어져서 당연하여 근거할만한 것이 없어 지극히 민망하고 격정스럽다고 걱정하는 光海君日記 즉위년(1608) 9월 辛丑條²¹⁾의 기사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전질을 제대로 갖춘 서적도 거의 없는 형편이었다.²²⁾

19) 上同, 2年閏 3月 乙丑, “傳于慶尙監司曰 . 且我國書籍表表可觀者 訪問于道內 隨得上送 勿以零星爲嫌”

20) 上同, 4年 6月 丙寅, “校印都監啓曰 我國書籍先爲印出事 曾有傳教 經濟六典 亦在其中 而閭閻間 絶無有處 弘文館亦有完帙 姑先以高麗史龍飛御天歌輿地勝覽等書 分刊於京外 故未及此書 今當更爲聞見 得其完帙 然後印出何如 傳曰允”

21) 上同, 即位年 9月 辛丑, “春秋館曰 先王朝實錄 卒哭後 宜即設局撰出 而平時史冊 蕩然無存 茫無可據 極爲悶慮 然莫重之事 不容但已 令該曹差出 堂上郎廳 或 集士大夫所聞見 或收聚私藏日記 多方商度 得使舉行爲當”

22) 上同, 2年 閏3月 丁卯, “傳曰 東國書籍 全帙絕無 其中如龍飛御天歌內訓書傳諺解詩傳諺解儒先錄等冊 待左傳畢印 卽爲繙印事 皆于校書館”

손실된 서적을 복구하기 위해 서적의 인출은 참으로 중대하고 시급한 일 이었으나 국가의 재정도 또한 어려웠던 것 같다. 광해군 2년(1610) 4월에 이항복이 “서적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동지방에 책정된 목판이 1,000葉이며 온갖 부역에 대한 독촉이 일시에 집중되고 있으나 그때가 마침 농번기이므로 추수 이후에 납부하도록 해달라는 청”²³⁾을 올리는 상소에서 알 수 있다.

광해군은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산일된 서적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서적을 인출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書籍校印都監을 설치한 것이다. 특히 校書館은 태종이 국초에 두었던 교서감과 서적원을 합쳤던 것으로 書籍校印都監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光海君日記 2년(1610) 11월 辛酉條에서 볼 수 있다. 즉,

병란을 겪은 이후로 크고 작은 서적들이 모조리 없어져 남아 있는 것이 없으니 진요한 서적 및 우리나라의 史集을 제때에 간행하여 후대에 전해 줄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고 성상께서 그동안 분부하신 것이야말로 정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들이 僚屬들을 신체하고 장역을 독려한 것이 또한 지극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본관의 각 부문별 장인이라고 해야 고작 3, 4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공역에만 전념케 하여 날수를 계산해 작업 일정을 독촉한다 하더라도 마치 개미가 흙을 쌓는 것처럼 쉽게 일을 완료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각사 및 사대부 집안의 도서를 새기고 서책을 찍어내며 종이를 재단하는 등의 크고 작은 일까지 모두 본관에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조금만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사정없이 매를 때리고 결박하여 구속시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진요한 서적을 간행하는 동안만은 본관을 書籍校印都監이라고 칭한 뒤 두 제조를 당상으로 삼고 경 교리 두사람을 도청으로 삼고 본관 관원 세사람을 낭청으로 삼는 동시에 창준인 이하 각부문별 장인들을 있는데로 이곳으로 옮겨 소속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한을 굳게 작정하여 감독함으로써 공역을 놔두

23) 上同, 2年 4月 癸巳, “李恒福啓曰 關東地方爲 萬生將 待盡。校書館字印板 無異於材木之害 本道卜定 元數一千葉 運刷馬之數五百匹 百役侵督 一時 集 當此極農之月 葉而荷斧斤 村里巖然 如不可已則 小遲期限 秋成備納”

고 私役을 행하는 폐단이나 날짜만 끝면서 헛되이 소모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마땅합니다.²⁴⁾

라는 견의를 예조와 의논하여 이를 뒤인 11월 22일 광해군의 승낙을 받아 설치된 것이다.²⁵⁾ 이는 진요한 서적과 우리나라 史集을 제때에 간행하여 후대에 전해주기 위하여 校書館을 각司의 다른 업무에서 침해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인 서적의 간행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화한 것이다.

書籍 校印都監의 조직은 校書館의 제조 두명을 당상으로 삼고 겸 교리 두 사람은 도청으로 삼고, 본관 관원 세 사람을 낭청으로 삼는 동시에 창준인 이하의 각 부문별 장인들은 있는데로 移屬시켰다.

또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출판의 기한을 정하여 집중 감독하므로써 정해진 기한 내에 서적을 간행하고자 한 것이다. 고려조의 장경도감이나 세조조의 장경도감이 특별한 도서를 인출하기 위하여 도감을 설치한 것과 같이 광해군조에서도 서적인출을 특별 사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기의 校印都監은 서적을 인출하는 일만 행하였으나 광해군 8년경에 종래의 鑄字制를 복구하려는 논의가 대두되었을 때는 주자도감의 일까지 겸하고자 한 것 같다. 즉, 광해군 8년(1616) 8월 己未條의 “주자를 만들기 위해 별도로 주자도감을 설치하면 校印都監의 貢役과 工匠을 나누어 보내야 하므

24) 上同, 2年 11月 辛酉, “校書館以提調意啓曰 兵亂以後 大小書籍 蕩然無存 緊閱之書及我國史集 不可不及時刊刻 以爲傳後之計 前後聖教 極其丁寧 臣等申飭僚屬 勸督臣役 亦非不至 而本館各該臣人 只有數三名 雖專意公役 計日督程 如蟻聚土 事未易完 諸各司及士大夫家圖書刊刻營冊印裝紙楮裁剪等大小之事 皆於本館責出 少不及則鞭朴狼藉 累累屬本館以各司中微賤之地 不敢齟齬於其間 不得不廢公役而應之... 不得已限緊閱書策印出間以本館稱爲書籍校印都監 兩提調爲堂上 兼校理二員爲都廳 本館官三員爲郎廳 單准以下各該臣役 盖數移屬 刻期監督殺無廢公行私引日耗費之 爲當”

25) 上同, 2年 11月 癸亥, “禮曹啓曰 以校書館啓辭 緊閱書策印出間 本館稱爲書籍校印都監 兩提調爲堂上 兼校理二員爲都廳 本館官三員爲郎廳 事傳教矣 印出書籍 自是本館之事不必至於稱爲都監 而本館之有此啓辭者 似是出於不得已也 如或只變名號 免有各司侵資而已 無始 之事 則雖稱都監 亦無大妨 上裁施行如何 傳曰依啓”

로 효율성이 없을뿐 아니라 낭비가 되므로 주자를 만드는 일까지도 校印都監에서 담당하도록 할 것을 청하여 윤허받았다”²⁶⁾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3. 주자사업

광해군조의 주자 사실을 나타내는 기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자제의 복구에 대한 논의가 광해군 8년(1616)에 있었던 것이나 물자 절약의 이유로 書籍 校印都監에서 담당할 것으로 윤허받았다.

그러나 주자사업은 주자도감에서 단독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광해군 9년(1617) 5월에 주자도감의 설치에 대한 논의²⁷⁾가 나오고 있다. 광해군 10년(1618) 4월 주자도감에서 장인들의 簿料에 대한 계문²⁸⁾에서 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년(1618) 7월에 주자도감에서

평시부터 서적을 인출하는 것은 오로지 주자에 험입었습니다. 그 후 경진년간에 선왕이 갑인자를 다시 고쳐 만들도록 명하셔서 나라에 통행하여 만세도록 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 번 병란을 겪어서 옛날 활자를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목각을 전용하게 되니 자체가 이그리지고 잘못되고 또 쉽게 많아 없어져 금방 새겨도 금방 깨여져 힘과 배용이 배나 듭니다. 다행히 성상께서 경적에 마음을 두시어 옛제도를 회복시킬 생각으로 특별히 국을 설치하도록 하시어 옛서의 문을 송상하는 뜻을 계술하셨으니 어찌 오늘날의 성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컨대 그 녹여서 야금하는 것이 세밀하고 공역이 아주 큰데도 전후에 담당

26) 上同, 8年 8月 己未, “書籍校印都監啓曰 鑄字事 已爲蒙允矣 鑄字都監 今若別設一局 則 校印都監役員匠匠 將爲分送 不但 費甚多 執分力 方印書籍 難以成形 當初大臣啓辭 以 都監太多 姑爲停止 誠有所見 鑄字之役 無非校印之事 虽不別設一局 只容入之物 依前磨鍊 自校印都監 使之鑄成則似爲便當 敢啓 傳曰 依啓”

27) 上同, 9年 5月 己巳, “傳曰 當此虛竭之時各都監一時竝設 其弊不 沅玩揭時日 久未畢役 鑄字報漏二都監 為先檢督 使於今年內 從速完畢”

28) 上同, 10年 4月 庚寅, “鑄字圖鑄啓曰 本圖鑄 鑄字所用粗劣數 當依戶曹 橫看計減矣 第 圖鑄設立之後 匠人經年 煅業長立官役 唯仰簿料 僅得完了 且此鑄字之役 最爲細密鑄治之際 緣銅品有高下 或有淳劣多出者 今若一依 橫看以計劣數 則貧賤匠人 久役勞苦之餘 不無冤悶 劣數計減之事 請依祭器圖鑄例 施行如何 傳曰 允”

한 낭청이 진심으로 일년만에 공역을 마쳤으니 극히 가상합니다. 예에 따라 수고에 보답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온전에 관계되므로 황공하게도 감히 아립니다.²⁹⁾

라고 서적을 인출할 때 수고한 자에 대한 논상을 품의하는 기록으로 봐서 주자도감에서 이미 활자를 주조한 것을 알 수 있다.

4. 포상

광해군은 전후에 손실된 서적의 복구에 주력하여 서적 수집이나 인출에 대한 공로가 있을 때 반드시 후한 상을 내려 독려함은 물론이고 적당한 직분을 제수하기도 하고 품제를 올려주기도 하였다. 이는 국사에 마음을 다한 사람은 포상하여야 한다³⁰⁾는 광해군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아니라 부왕이신 선조의 서적 수집 방책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선조는

옛날 전란이 지난 후 버려진 서적을 구입한 것은 의외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문현의 나라로서 불행하게도 흥적에게 친파당하여 종의의 서적이 모두 탕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전에 일적이 下書하여 구입하게 했는데도 널리 구입하여 올려 보내지 않았으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사민들의 집에 어찌 물만한 서책이 소장되어 있지 않겠는가 경은 다시 다방면으로 널리 구하되 그 중 동국에 관계되는 서적은 더욱 힘써 구하고 서법 등의 서책도 아울러 구해 올려 보내게 하라. 서책을

29) 上同, 10年 7月 戊申, “鑄字都監啓 旨平時書籍印出 專賴鑄字 而厥後庚辰 先王又命改鑄 甲寅字 通行一國 爲萬世利 不幸一經兵 舊字蕩失 專用木刻字體舛訛 缺亦易 族刻族刮 功費倍 幸賴聖上 留心經籍 思復舊制 特命結局 繼述列聖右文之意 豈非今日之盛舉乎 顧其冶金細密 功役浩大 而前後次知郎廳 盡心監護? 一年而畢役 極為可嘉 似有依例酬勞之事 而係干恩典 恐恐啟 啓曰 提調以下員役仕進日月 工匠立役朔數 一一詳細書啓”

30) 上同, 元年 3月 丁亥, “司諫院曰 鍔賞 人主所以勵世利磨鈍者也... 豈鑄賞 莫非於且 請還收成命 答曰 盡心國事之人 不可不褒賞 不允”

바친자는 마땅히 논상할 것을 각도에 하유하라³¹⁾

고 전후의 서적 수집에 대해 여러 가지 방책을 밝히는 가운데 서책 현납자에 대해 논상하도록 하고 있다.

서적을 진현한 데 대한 보상은 조선 전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면이나 판작으로 사상하였고 때로는 ‘從願厚賞’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서민에게는 면포, 사류에게는 서적을 지급하였지만³²⁾ 후기로 내려오면서는 관직이나 호피 등을 주었다.

뿐아니라 광해군 2년(1610) 윤삼월에 부연하는 사신들에게 필요한 서적들을 판본으로 엄선하여 사오도록 할 것을 명하면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보아서 상벌을 내리겠다³³⁾라고 밝히고 있다.

광해군은 서적을 현납 혹은 수집하거나 편찬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포상하였는데 먼저 서적 현납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위년(1608) 12월에 진주사가 서책을 무래하여 현납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熟馬 한필씩과 堂上通事와 上通事에게는 半熟馬 한필씩을 하사하기도 하였다.³⁴⁾

광해군 2년(1610)에 曹倅이 國朝寶鑑을 진상하자 광해군은 조종의 보감 전서를 보니 매우 흐뭇하고 기쁘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표범가죽을 하사하여 장려하였다.³⁵⁾

31) 宣祖實錄, 32年 8月 丁亥, “備忘記曰 古者兵亂之後 賈求遺書 其意有在 我國以文獻之邦 不幸爲凶賊殘破 中外書籍 蕩然無存 前者曾爲下書求之 而不爲廣求上送 至爲不當 士民之家 豈無藏置可觀之書乎 鄭其更爲多般廣求 其中凡干東國舊籍 則尤當極力求之 如書法等冊 亦竝求上送 所獻之人 當爲論賞事 下諭于各道”

32) 鄭亨愚, 朝鮮時代書誌史研究, 서울 :韓國研究院, 1983. p. 61.

33) 光海君日記, 2年 閏3月 乙亥, “傳曰 後漢書南北史遼金元史太平御覽歷代名臣奏議等冊 今此千秋使行次 令戶曹給價 以官本極擇貿來事 言于禮曹 觀其用意能否 當有賞罰 此意 申飭于上通事”

34) 上同, 元年 1月 戊子, “傳曰 陳奏使書冊貿來爲可嘉 使書狀官各賜熟馬一匹 堂上通事及 上通事各賜半熟馬一匹”

35) 上同, 2年 12月 壬辰, “曹倅進國朝寶鑑 上賜豹皮以獎 國朝寶鑑 我祖宗朝書也 自上求見 曹倅適有家藏上之 上曰 得見祖宗寶鑑全書 深用嘉悅因賜豹皮 曹倅時 右承旨”

광해군 3년(1611) 4월 8일에 聖節使에 수행하였던 譯官인 金義仁이 사사로이 대명회전을 비롯하여 수백의 책자를 구입하여 홍문관에 헌납한 것을 알고 그 성의가 가상하다고 加資할 것을 명하였다.³⁶⁾

광해군이 서적의 편찬에 관계되었던 사람들에게 포상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즉위년(1608) 10월 醫書의 인출에서 감역관이었던 李絡은 東班에 서용하고 申得一과 李希憲은 본 衙門의 正職에 제수하되 이미 정직을 행하였으면 높은 품계로 부록하게 하고, 청준 이하 사람들은 훈련도감의 병서를 인출하고 내린 상격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³⁷⁾

광해군 4년(1612)에 선원록의 교정을 담당하였던 교정청의 당상과 낭청에게 차 등을 두어 상내리기도 하였다.³⁸⁾ 이때의 포상은 加資를 시키거나 말을 하사하는 것들이었다.

동년(1612) 1월에 詩經諺解와 內訓을 교정한 홍문관의 전후 관원에게 加資시키고 또 말과 물건 등을 차등을 두어 주었고, 新訂史略과 통감찬요, 詩經諺解를 쓴 사람에게도 차등을 두어 米布를 하사하였다.³⁹⁾

광해군 10년(1618) 7월에는 주자도감에서 활자를 만들어 서적을 인출한 공로로 주자도감의 제조 이하에게 상전을 베풀었다.⁴⁰⁾

그러나 광해군의 포상제도는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하여 가끔 신하들이 환수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광해군은 국사에 마음을 다한 사람은 포상하여

36) 上同, 3年 4月 丁丑, “傳曰 聖節使譯官金義仁 私貿大明會典 納于弘文館 其誠可嘉 加資”

37) 上同, 即位年 10月 廣戌, “傳曰(備忘記) 醫書印出監役官李絡東班敍用 申得一李希憲本衙門正職除授 已行正職則高品付祿 唱准以下人等 依訓錄都監兵書印出賞格例磨鍊”

38) 上同, 4年 1月 廣戌, “璿源錄校正廳堂上郎廳 賞格有差”

39) 上同, 4年 1月 壬子, “詩經諺解內訓校正 弘文館前後官員加資給馬賜物有差 新訂史略通鑑節要 詩經諺解書寫人等 賦米布有差”

40) 同, 10年 7月 戊申, “鑄字都監啓曰 自平時書籍印出 專賴鑄字 而厥後庚辰 先王又命改鑄 甲寅字 通行一國 為萬世利 不幸一經兵 舊字蕩失 專用木刻 字體舛訛 缺亦易 旋刻旋刮 功費倍 幸賴聖上 留心經籍 思復舊制 特命結局 繼述列聖右文之業 豈非今日之盛舉乎 顧其鎔治細密 功役浩大 而前後次知郎廳 盡心監護 一年而畢役 極為可嘉 似有依例酬勞之事 而係干恩典 懼恐敢啓 傳曰 提調以下日役仕進日月 工匠立役朔數 一一詳細書啓”

야 한다⁴¹⁾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의인이 현납한 대명회전은 중국에서 중국의 모든 기밀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전질을 주지 않던 것이다. 좀처럼 구하기가 힘들었던 대명회전 신간 1부를 선조 22(1589)년 성절사 윤근수가 현납하자 그 공로로 품계가 자현대부로 올려지고 형조판서에 임명된 다음 토지, 집, 노비를 하사받은⁴²⁾ 사실이 있다. 이러한 연고때문인지 승정원에서는 김의인이 서적을 현납한 것은 순수한 뜻이 아니라 포상을 노리어 외람된 짓을 한 것이므로 그 서적을 다시 돌려주게 하고 김의인은 추고하여 賞命을 환수하도록 계를 올리고 있다.⁴³⁾ 이 문제는 상을 노린 현납이라는 이유에서 광해군이 내린 賞命을 환수할 것을 계속 신하들이 청하였던 것이다. 광해군은 처음에는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신하들의 집요한 요청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4월 22일 환수하도록 하였다.⁴⁴⁾

이처럼 역관들이 사적으로 구입한 물품들을 조정에 현납하여 포상을 받는 것을 기화로 지나치게 현납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사역원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광해군은 그들이 현납하는 물품들이 서적과 염초, 금은 등 국가의 경영에 필요한 것⁴⁵⁾이라며 법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뿐아니라 광해군 4년(1612)에 선원록의 교정청의 당상과 낭첨에게 포상하

41) 上同, 元年 3月 丁亥, “司諫院曰 將賞 人主所以勵世利磨鈍者也 . 豈濫賞 莫非於且 請還收成命 答曰 盡心國事之人 不可不褒賞 不允”

42) 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母岳實學會叢書 第7輯), 서울, 혜안, 1996, p. 31

43) 光海君日記, 3年 4月 丁丑, “傳曰 聖節使 譯官金義仁 私貿大明會典 納于弘文館 其誠可嘉 加資 政院啓曰 書籍雖與他物不同 安敢公然私納於內閣乎 希望汎濫之狀 極為可惡 請命玉堂 還給其書 金義仁推考 賞命還收 答曰 啓意 具悉 但所進者書籍 而既納于玉堂 則仍施酬賞之典 有何不可 加資承傳 速為捧行”

44) 上同, 3年 4月 丁巳 “司諫院連啓 請還收金義仁加資之命 答曰 依啓”

45) 上同, 4年 1月 丙午, “司譯院 以都提調李元翼 提調李廷龜李時彥意 請依祖宗朝舊例 譯官等赴京付祿 皆以試講計仕而為之 以社牟利之徒 貿納物貨經營圖占之 傳曰 無意練業者 立法勸成則可矣 至於公貿納之路 設禁防塞 無乃太狹乎 書冊御覽之物 焰硝礮敵之具 金銀亦係國用 不可無者 恐雖為如此一切之議也 此一勿施”

上同, 4年1月 己酉條 參照

였을 때도 당시 조정 신하들은 상격이 범람된다고 철회할 것을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⁴⁶⁾, 同年(1612) 2월에도 사간원에서 서적편찬에 대한 상으로 加資한 것을 개정하도록 하는 계문에 불응한 사실⁴⁷⁾에서 광해군이 서적의 간행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상당히 격려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5. 서적 분산 보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광해군은 서적을 분산하여 보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전란으로 사대사고 중 유일하게 전주 사고만이 남았던 사실을 잘 알았던 광해군은 서적 보존을 위해 분산시켜 보관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 원년(1609) 12월에 전쟁으로 인하여 나라의 典古文書가 거의 모두 흩어지거나 유실되어 무릇 상고할 것이 있어도 자료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든 등록을 각각 벼껴서 실록의 봉안처에 나누어 간직하도록 명하였다.⁴⁸⁾ 이는 전란 중에 산일되었던 서적의 복본을 만들어 분산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서적이라도 보존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같은해(1610) 9월에는 병란으로 없어진 사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도감의 등록을 상세히 등서하여 실록봉안처에 나눠 보관하도록 하였던 바⁴⁹⁾ 이 또한 서적의 분산 보관이라고 볼 수 있다.

광해군 5年(1613)에는 실록봉안처에다 우리나라 築定의 事跡 草稿本, 傳

46) 上同, 4年 1月 壬子, “司憲府(持平趙希逸)啓曰 貧者 勵世之利器 勸善之大柄也 古之人君 其濫施 惕至徵 猶宜惜之 金貂之貴 鞍馬之重 豈特一 衷哉 今者賞典極繁 犹及無勞(名器日輕 物力日匱)與情齊慎 國言藉藉 請王世子冊封嘉禮 璞源錄纂集 通鑑史略校正時 賞加及賜馬 還收成命 答曰 賞格事 一依祖宗朝舊例參酌以爲 不可還收”

47) 上同, 4年 2月 己巳, “司諫院連啓賞加改正事 不允”

48) 上同, 元年 12月 戊辰, “傳曰 兵火之餘 我國典古文書 散逸殆盡 凡有所考無可取 則自今以後 凡膳錄各件 俱書分藏于實錄奉安處”

49) 上同, 2年 9月 辛酉, “傳曰 各都監膳錄 詳細膳書 分藏于實錄 奉安處事 言于該官”

記, 諸家述作으로서 中朝에 없는 서적들을 분장하였고⁵⁰⁾, 다음해(1614)에는 訓義 綱目 5건을 분장하였다.⁵¹⁾

IV. 書籍 菲集

서적의 수집 현황을 국내수집과 국외수집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해군조 당시의 서적 손실의 범위는 실록의 편찬에 근거할 자료까지 없어진 지경이었다. 광해군조에서 서적을 널리 구했던 목적중의 하나는 실록의 수정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록을 수정하고 편찬할 책임의 부서였던 실록청에서는

“임진년 이전의 실록을 지금 수정하여 편찬하려고 하는데 고증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 착수할 수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임진년 이전의 史草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먼저 수정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모로 자료를 수집 해야겠습니다.”⁵²⁾”

라고 당시의 자료가 극히 부족하므로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다고 계문하고 있다. 이때 실록청에서 제시한 수집의 방법은

“故 監司 裴三益의 집에 병란 이전의 연도별 朝報가 보관되어 있고, 故 判書 李聖, 故 兼知 李壽俊의 집에도 병란 이전의 朝報가 보관되어 있으며, 故 參議 柳祖

50) 上同, 5年 正月 辛酉, “政院啓曰 實錄奉安處 例藏他古今書籍 已覺充棟 應有浩汗之弊 惟我國纂定事跡單集傳記諸家述作 中朝無所書籍 不可不分藏 以備文獻之徵 從之”

51) 上同, 6年 9月 丙辰, “傳曰 訓義綱目五件 實錄奉安處 分藏 三件內入”

52) 上同, 元年 10月 癸丑, “實錄廳曰 壬辰以前實錄 今將修纂 而范無考據 莫能着手 極為可慮 今當姑就壬辰以後史草 一邊先為修正 一邊多方搜訪矣”

의 집에는 임진년의 行朝日記가 있다고 하니 이들 본가의 자제들에 빠짐없이 찾아내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間閣에 살고 있는 사대부 집에 家藏日錄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 가져다 올려보내게 하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즉시 내주지 않는 자에게는 사실이 드러나는대로 치죄하게 하며, 고종할만한 진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은 지방에 알려 士庶을 막론하고 스스로 바치는 자에게 특별히 상을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병란 이전에 벼슬자리에 있던 사람이 각자 듣고 본 것의 평소의 家藏日記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을 경우 다소를 막론하고 바치게하여 채택할 수 있게하고, 사대부의 문집 중에 碑銘, 碑, 简의 내용이 時政에 관계되어 고증하고 채택할 만한 것이 있으면 모두 수집하며, 병란 이후의 兼春秋 및 吏曹의 批草와 상고할 만한 家藏日記들을 모두 바치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의 각衙門에 고증할만한 문서와 여러 都院의 謄錄과 承政院日記 전부 및 承傳單抄冊과 연도별 소, 차 및 관상감의 연도별 역년기 등을 모두 실어 보내도록 할 것을 팔도감사들에게 급히 하유하고 서울의 각 아문과 한성부의 오부가 승전을 반들어 아뢰어 시행하게 하는 것”⁵³⁾

으로 이는 실록의 자료 수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광해군조에서 시행한 서적 편찬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해조에게 당상 낭청을 차출하도록 하여 혹은 사대부가 듣고 본 것을 수집하고 혹은 개인이 주장한 日記를 모으기도 하여 여러 방면으로 헤아리고 조절하여 편리하게 거행하는 것이었다.

광해군 원년(1609)에는 임진란을 겪은 후 들어난 충신, 효자, 열녀들을 표창하여 그들의 행동을 전 국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임진년 이후의 충신,

53) 上同, 元年 10月 癸丑, “實錄廳啓曰... 聞故監司寢三益家 藏亂前各年朝報 故判書李家及故僉知李壽俊家 亦有家藏亂前朝報 故參議柳祖家 有壬辰年間行朝日記云 令本家子弟 無遺搜出送納 此外間上大夫家 或有家藏日錄聞見 搜取上送 如或有之 而不即出給者 隨現治罪 緊關可考文書 知委于中外 無論士庶 許令自納 議論賞 且亂前仕宦人 各以耳聞目見 隨所記劄錄 如平時家藏日記之為 不拘多少 使之投進 以備採擇 士大夫家文集中 碑銘錄疏劄有關時政 可以考探者 ——收拾 亂後兼春秋人員 吏曹批草相考 家藏日記 ——依例督納 京外各衙門可考文書 諸都監謄錄 承政院日記全錄 承傳單抄冊各年疏劄及觀象監各年曆年記等 ——輸送事 八道監司處 急急下諭 京中各衙門 漢城府五部 捧承傳 知委施行如何 傳曰尤”

효자, 열녀들의 초상화가 있을 경우 구해들이도록 하였다.⁵⁴⁾ 이들의 사적을
간행 반포하려는 광해군의 의지가 상당히 강렬하였던 것은 육당에서 일이 중
대하다는 이유로 절절 끌고 마감되지 못하고 있자 광해군 3년(1611) 2월과
광해군 4년(1612) 6월에 다시 흥문관에 전교를 내리고 있는 사실⁵⁵⁾에서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토대로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광해군 6년
(1614)에 撰成하여 광해군 9년(1617)에 간행되었다.

두 번째의 방안은 謄書하는 것이었다. 등서는 서적을 복구하려는 일차적이
고 초보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필요한 서적들을 초고본으로 등사한
다음 필요 부수에 따라 서적 인출의 일이 결정될 수 있다. 서적 등사의 일은
임진란 이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광해군 원년(1609) 2월에
寫官으로 선발된 李禹臣이 유영경의 권세를 믿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함을 고
변하는 지평 鄭廣成의 疏에서 이미 類合 등의 서책을 등사하도록 하였던 사
실⁵⁶⁾을 알 수 있다.

광해군 2년(1610)에는 국정에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 고사를 열람하기 쉽
게 등서하였다. 병란으로 등록이 없어진 뒤부터 국가 의전에 관계되는 고사
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번번히 실록을 찾아야했다. 그러나 실록은 列聖의 史
書이며 金의 秘藏으로 매번 출납하여 더럽힐 수 없을 뿐 아니라 권수가 많
아서 급하게 하루 사이에 열람하여 상고하려면 자세하게 알 수 없는 폐단이
있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조의 실록중에서 吉, 凶, 軍, 寳, 嘉에
속하는 사항을 분류하여 중국의 소대전칙, 전고기문 등의 책처럼 한다면 각

54) 上同, 元年 10月 乙丑, “傳曰壬辰亂後 忠臣孝子烈女 未爲不多 各道啓本 速續入來 卽送
議處覆啓旌表 以示嘉獎之意 且壬辰以後 忠臣孝子烈女 如有圖畫之本 實入可也”

55) 上同, 3年 2月 壬申, “傳曰 壬辰以後 忠孝義烈之行何限 玉堂以事係重大 遷延不勘 已至
二十年之久 歲月逾久 事迹逾湮 豈不可惜 從速啓下刊頒 以爲勸勵(事言于弘文館)”
上同 4年 6月 甲子,

56) 上同, 元年 2月 丙寅, “持平鄭廣成 禮賓寺主簿李禹臣 本以賤流 憑藉柳永慶之勢從恣無狀
忌難心盡昔 上年正月 大行大王下 類合等冊于弘文館 使善手謄寫及其始寫之日 又申教之
曰 寫人姓名及所書張數 仔細啓造 禹臣以寫官最後至乃旨曰 柳政丞將辨 鄭仁弘之疏 必待
我寫疏 決不可留此寫冊。其知有權臣 而無君父 犯國法之罪 不可不憲 請命拿鞠依律定罪。”

조의 현장 명료하여 열람하기에 편리할 것이라고 예조에서 계문하는 바 광해군은 그 뜻이 매우 좋다고 허락하면서 일일이 자세히 고찰하여 등서하여 2건으로 정서한 뒤 한건은 예조에 비치하고 한건은 결내에 들이게 하였다.⁵⁷⁾

광해군 4년(1612)에는 선조가 지으신 小序 및 絶句의 詩가 기재된 軸子가 병화 중에 없어져 그 소재를 모르고 있다가 승정원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실록에도 수록하여야 할 자료이므로 등서하여 실록청에 보내고 본축은 다시 들어오게 하고 있다.⁵⁸⁾

광해군 10년(1618) 10월에는 찬집청에서 翼社錄을 贈寫한 초서본을 올리고 있으며,⁵⁹⁾ 다음해(1619) 4월에는 柳逆의 추국안을 贈書하여 올리고 있다. 이때 광해군은 武定寶鑑 한건을 급히 등서한 다음 주자로 인쇄하도록 명하고 있다.⁶⁰⁾ 이에 대해 찬집청에서는 續武定寶鑑 3책 108전을 이미 목활자로 인쇄해 내었으므로 다르게 할 수 없으니 그대로 목활자를 사용할 것을 주청하

57) 上同, 2年 1月 丙申, “禮曹啓曰 國朝數百年文籍 蕩失於 兵變之餘 禮經所載之事 則自有名文 可以按行矣 時勢異宜 變禮橫生 節目間難斷之事 多在於禮文之外 必須據故事 可以無悔 而既無官中贈錄 每遇禮變 必請考見實錄 雖出於不得已 而列聖史書 金秘藏 豈可每為出納胥瀆如是乎 事禮極為未安 昨但此也 卷帙甚多 忙急考閱於一日之間 其勢自不能詳悉 今若就各朝實錄中 類分吉凶軍賓臺 凡于儀注節目可據事例 逐一抄出 彙為一書 而若中朝昭代典則典故記聞等書 則各朝憲章 瞭然便覽 藏於本曹 永為成式 文獻足徵之美可以復見 而史閣秘書 更無類數問閼之患 大臣之憂亦然 敢啓 傳曰 啓意甚好 一一詳考瞭出 編寫二件 一件藏諸禮曹 一件入內”

58) 上同, 4年 1月 己未, “政院啓曰 伏見政院所藏軸子 中有先王御製小序及短律 臣等披闡誦 不勝悲感之至 此軸 没於兵火之中 不知其所在矣 幸而得之 仍藏本院 當時威迹 復睹於今日 此乃不幸中之幸也 臣等惶念 或未經預覽 且於先朝實錄 似不可不載故 敢此奉進 答曰 今見所進軸子 不勝悲感之至 贈書送于實錄廳 本軸還入”

59) 上同, 10年 10月 癸酉, “撰集廳啓曰 諸送追案 幾盡出草 但未正書 姑翼社錄為先撰 寫以急於御覽”

60) 上同, 11年 4月 丙子, “撰集廳啓曰 諸逆文書 幾盡撰出 逆推案 當為印出 而未及啓下 故侍講院所藏續武定寶鑑 先為印出 而元秩四冊中 一冊未具 武定寶鑑則完無所儲 廣覽不得 以此停役 聞弘文館所藏武定寶鑑及續武定寶鑑全秩 先王朝入內未下云 還下印出似當 且逆推案 已為正書一本以進 啓下後當為印出之意敢啓 傳曰 依啓 諸逆若 印 則不可先印 戊申逆書 更為察啓 武定寶鑑急令寫字官 一件贈出 以鏹字印出 而本冊則還入”

고 있다.⁶¹⁾

광해군 6년(1614) 7월에는 비변사에서 민간에 통행하고 있는 國朝征討錄 1권을 필사하여 올렸다. 그 책은 祖宗朝에서 왜적을 정벌한 사실이 다 기록되어 있으나 책이 오래되고 낡아서 상고할 수 없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寫字官에게 똑같이 베끼게 한 다음 입제하였던 것이다. 광해군은 비변사의 서적 현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 책을 등서하여 실록 봉안처에도 1부를 간직하도록 명하였다.⁶²⁾

광해군 원년(1609) 1월에 侍講院에서 동궁의 학습을 위한 서적의 구입을 전의하고 있다. 즉, 侍講院에 소장된 서적이 적어 간혹 참고하여 열람할 때 충분하지 못함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책은 각도의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인쇄하여 보내게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서적은 중국에서 사오도록 하자는 것이었다⁶³⁾.

광해군 2년(1610) 12월 16일에 광해군이 國朝寶鑑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그 완질이 궁궐 내에 보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있는 곳에서 사다가 들어놓는 일을 해조에 말하여 구비하도록 하였다.⁶⁴⁾ 이 책은 며칠뒤인 12월 21일에 당시 우승지였던 曺倅이 현납하였다.⁶⁵⁾

광해군 4년(1612)에는 校印都監에서 經濟六典을 인출하기 위해 그 완본을 먼저 구하는 기록이 있다. 그 책은 여염간에는 전혀 남아 있는 곳이 없고 홍문관에도 완질이 없었으므로 완질을 구한 다음 인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61) 上同, 11年 4月 戊寅, “武定寶鑑及續武定寶鑑還下事 已爲蒙允 必須速下然後 不廢工役 矣(鑄字印出事 則續武定寶鑑三冊一百八件 已以木字印出 不可異同 仍用木字無妨 敢 啓) 傳曰依啓”

62) 上同, 6年 7月, “備邊司啓曰 間間有國朝征討錄一冊 朝宗朝征伐倭虜之舉”

63) 上同, 元年 8月 壬申, “且院中書籍 所儲不數 或於考閱之際 多有未廣之歎 我國所刊之冊 移文于各道監司 使之印送 我國所無之書 則貿於中華之意 爲敢啓 傳曰 依啓”

64) 上同, 2年 12月 丁亥, “傳曰 國朝寶鑑內藏無完帙 有處購以入(事言于該會)”

65) 上同, 2年 12月 壬辰, “曹倅進國朝寶鑑 上賜豹皮以獎 國朝寶鑑 我祖宗朝書也 自上求見 曹倅邁有家藏上之 上曰 得見祖宗寶鑑全書 深用嘉悅因賜豹皮 曹倅時 右承旨”

을 올리고 있는 것⁶⁶⁾이다.

2. 국외수집

서적을 國外인 중국에서 구입하는 예는 다른 역조와 다르지 않은 일로써 새로운 서적이나 국내에 없는 필요한 서적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도로 볼 수 있다. 특히 광해군조는 임란으로 입은 서적의 피해를 복구하여야 했던 시기였으므로 국외수집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광해군은 즉위(1608)년 12월 庚午에 陳奏使로 연경에 갔다 돌아온 이덕형과 황신으로부터 새로 구입한 서적들을 현납받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⁶⁷⁾

광해군 2(1610)년 윤3월에는 북경으로 떠나는 천추사에게 호조로부터 책값을 주게 하면서 後漢書, 南北史, 金史, 元史, 太平御覽, 歷代名臣奏議 등의 책을 관본으로 엄선하여 사오도록 할 것을 명하고 있다.⁶⁸⁾ 이들 서적들은 역사서와 제도류에 관한 것들로서 전후의 체제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라고 볼 수 있다.

광해군 2년(1610) 진주부사로 부임하였던 허균은 서책을 현납하였으나 그 내용은 알 수 없다.⁶⁹⁾ 광해군 3년(1611) 4월8일에 聖節使에 수행하였던譯官인 金義仁이 사사로이 대명회전을 구입하여 홍문관에 현납하였다.⁷⁰⁾

66) 上同, 4年 6月 丙寅

註 60) 참조

67) 上同, 即位年 12月 庚午, “陳奏使李德馨黃愼回自京師 祕啓陳奏周旋之事 且以貿來 新書 及冠服製度進 答曰知道 因國事艱虞 務卿等遂行 深用未安 幸賴盡力周旋 得完大事 豈非 宗社之慶 且貿來書籍及各樣冠服等物 足見好 禮變隨之誠 當令禮官議處”

68) 上同, 2年 閏3月 乙亥, “傳曰 後漢書南北史遼金元史太平御覽歷代名臣奏議等冊 今此于 秋使行次 令戶曹給價 以官本極擇貿來事 言于禮官 觀其用意能否 當有賞罰 此意申飭于 上通事”

69) 신양선, 전계서, p. 36

70) 光海君日記, 3年 4月 丁丑, “傳曰 聖節使 譯官金義仁 私貿大明會典 納于弘文館 其誠可嘉 加資 政院啓曰 書籍雖與他物不同 安敢公然私納於內閣乎 希望汎濫之狀 極為可惡 請命玉堂 還給其書 金義仁推考 賞命還收 答曰 啓意 具悉 但所進者書籍 而既納于玉堂 則仍施酬賞之典 有何不可 加資承傳 達為施行”

광해군 5년(1613) 12월 주청사 행차때 春秋四傳, 通鑑纂要, 杜氏通典, 玉海, 李選註 文選를 각 1건씩 모두 관본으로 잘 가려서 사오도록 명하였다.⁷¹⁾

광해군 7년(1615) 1월 승정원에서 올린 계에 의하면 “허균이 역판을 시켜 각종 서적을 승정원에 보냈으나 승정원에서는 전날의 장계에 올려져 있는 것만 봉입하고 나머지는 허균이 직접 봉입하도록 하였다.”⁷²⁾ 그 후 허균은 직접 學海와 林居漫錄과⁷³⁾ 서명이 밝혀지지 않은 서책 4건을 바쳤다.⁷⁴⁾

허균은 광해군 6년(1614)에 천추사로 북경에 갔으며 그때 그는 다수의 서적을 구입하여 현납하였던 것으로 광해군은 이들 일행에게 加資시키고 있다.⁷⁵⁾

광해군은 동년(1615)閏八月에 다시 閔馨男과 許筠을 북경에 冬至兼陳奏使로 파송하면서 引見하는 자리에서 서적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즉, 광해군은 왕세정의 저술이 무엇이며, 그것이 중국에 많이 전파되었는지, 그 문집을 다시 개간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 물고 있다. 이때 광해군은 허균이 무래한 4종의 책을 찾아 오도록 명하고 있다. 또 劉氏의 鴻書를 기어이 얻어 오라고 하면서 만일 얻지 못하면 林居漫錄을 구입하라고 명하였다.⁷⁶⁾ 허균은 부연사신으로 북경을 다니면서 서적에 관심이 많아 광해군 6~7(1614~1615)

71) 上同; 5年 12月 丙戌, “傳曰 春秋四傳通鑑纂要杜氏通典玉海李選註文選 各一件 奏請之行以官本極擇貿來”

72) 上同, 7年 1月 戊辰, “政院啓曰 千秋使許均 令譯官來呈各件書冊 本院查考前日狀啓所錄全件擇入 而他餘書冊 既無自己啓辭 又無該曹公事 無端擇入 有違常規 使之親自來呈 而厥後中止 未知所以 請推考 令該曹速為擇入 傳曰允”

73) 上同, 7年 2月 辛巳, “傳曰 許均貿來學海林居漫錄 入之”

74) 上同, 7年 2月 癸未, “傳曰 許均貿來冊四件 入之”

75) 上同, 7年 6月 庚辰, “傳曰 上年千秋使許均 非但多貿書冊 至於辨訛事 多般聞見馳啓 且世宗皇帝御製箴御筆 購印以來 此眞寶墨也 加資 書狀官金中消 亦不無周旋相議之事 陞敍堂上 譯官宋業男加資”

76) 上同, 七年 閏八月 壬子, “王引見冬至兼陳奏使閔馨男 副使許筠于宣政殿... 王曰王世貞所述 何冊耶 許筠曰 山集也 王曰 此集中朝盛行耶... 王曰王世貞文集 可以刊改耶 許筠曰 禮部之准請與否 未可知也 閔馨南曰 准請之事 事在中朝 未可從心所為也 王曰 四件覓來 許筠曰 林居漫錄 則小臣赴京時 與金中消觀之 泌刊本也 大臣之意 非刊本故 不欲刊改矣 臣未嘗見之 聞其曲折 臣子之心 豈可一刻安心 以後其奉命之意乎 王曰 劉氏鴻書 何鴻字 何書耶 其書期於必得 如不可得 林居漫錄覓來可也”

년 사이에 거의 4천여권의 책을 사왔다고 밝혀지고 있다.⁷⁷⁾

이상의 서술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외수집 서적의 상황

年度	書名	數量	수행원	備考
즉위(1608)	未詳	未詳	이덕형, 황신	무래
2 (1610)	後漢書, 南北史, 金史, 元史, 太平御覽, 歷代名臣奏議	미상		
2 (1610)	미상	미상	허균	무래
3 (1611)	大明會典	1부	김의인	'
5 1613	春秋四傳, 通鑑纂要, 杜氏通典 玉海, 李選註 文選	각1건	주청사	회방
6 1614	미상	다수	허균	'
7 1615	學海, 林居漫錄 외 4건		허균	

V. 書籍編纂과 刊行

1. 書籍編纂

광해군조에서는 비교적 많은 醫書가 진행되었다. 이는 임진란과 정유란 때 일본군에 의해 약탈된 醫書를 복구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광해군 4년 (1612)과 5년(1613)에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광해군 2년(1610) 8월에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醫書인 東醫寶鑑이 撲集되었다.⁷⁸⁾ 이 책은 선조 29년(1596)에 왕명으로 편찬이 시작되었다가 정

77) 유명종, 한국의 양명학,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3, p. 54.

78) 上同, 2年 8月 戊寅, “傳曰 陽平君許浚 曾在先朝 特 撲集醫方之命 積年彙粹 至於 移流 離之中 不塵其功 今始編秩以進 仍念先王命撰之書 告成於寡昧嗣服之初 予不勝悲感 許 浚熟馬一匹面給 以酬其功 此方書 令內醫院設局 斯速印出 廣布中外(書名東醫寶鑑 蓋 廣集中朝古今方書 粹爲一卷 分類成秩)”

(1611) 1월에 “지금 龍飛御天歌를 내리니 교정하여 인쇄한 후에 다시 들여 보내라⁹⁴⁾”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 龍飛御天歌는 조선왕조 건국을 天命을 받은 것으로 합리화시키면서 후대에 경계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광해군 4년 (1612)에 다시 발간되어 반사되었다.⁹⁵⁾ 같은 해(1612)에 반사된 것으로 中庸 諺解, 論語 諺解, 孟子 諺解가 있다.⁹⁶⁾

광해군 4년(1612)에는 高麗史, 龍飛御天歌, 輿地勝覽 등의 책이 인출되었 다. 그 사실은 書籍校印都監에서 경제육전의 완질을 구한 다음 인출할 것을 청하는 기사 속에 “이 책은 광해군이 高麗史, 龍飛御天歌, 輿地勝覽 등의 책과 함께 인출하도록 전교하였던 것이나 다른 책들을 인쇄하느라 미쳐 간행하지 못했다”라는 기록⁹⁷⁾으로 알 수 있다.

광해군 4년(1612) 4월에 校印都監에서 國朝寶鑑을 인출하도록 명하고 있으며⁹⁸⁾ 동년(1612) 11월에는 訓練都監에서 小學諸家集註가 인출되었다.⁹⁹⁾ 같은 해(1612) 12월에는 전국적으로 여역이 성하게 일어나 이미 전염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 酸瘧方이란 책을 校書館에서 많은 수를 인출하여 중외에 널리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벽온방은 張數가 많지 않아 만들기가 쉬웠던 것이다.¹⁰⁰⁾

광해군 5년(1613) 5월에는 훈련도감에서 改事撮要를 인출하였다.¹⁰¹⁾ 같은 해(1613)에 반사된 것으로 詩經諺解, 訓蒙字會,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大典

94) 上同, 3년 1月 甲子, “傳曰 今下龍飛御天歌 校印後還入”

95) 韓國古書年表資料, p. 29

96) 上揭書, p. 28

97) 光海君日記, 4年 6月 丙寅, “校印都監啓曰 我國書籍先爲印出事 曾有傳教 經濟六典 亦在其中 而間間絕無有處 弘文館亦有無完帙 故先以高麗史龍飛御天歌輿地勝覽等書 分刊於京外 故未及此書 今當更爲聞見 得其完本 然後印出何如 傳曰允”

98) 上同, 4年 4月 辛卯, “傳曰 國朝寶鑑印出事 曾于校印都監”

99) 韓國古書年表資料, p. 28.

100) 光海君日記, 4年 12月 辛亥, “政院啓曰 目今一疫熾發 酸瘧方一書 張數不多 工役易就速令校書館 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 如何 傳曰允”

101) 韓國古書年表資料, p. 29.

後續錄, 大典續錄, 經國大典이 있다.¹⁰²⁾

광해군조에서 외국의 요청에 의해서 서적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3년(1611) 8월에 오광도어사 양호가 전에 그가 조선을 경략하였을 때 세운 유애비의 송시문을 요구하자 왕이 예조에 명하여 별도의 송덕비를 모래재 너머에 세우고 몇본을 인쇄하였다. 또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널리 찬송시를 지어 대제학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여 5,6권을 인출하였고 또 본국의 3차 변무주문으로 그 책머리에 서문을 넣어 보냈다 또 이때 양호가 소판본 수백권을 요구하자 모두 허락해 주었다.¹⁰³⁾

광해군 6년(1614) 9월 戊午에 丘遊擊이 우리나라의 詩文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남방문사들과 교제가 많았던 그는 남방에 우리나라 詩文집을 보내기 위해 간본이거나 사본이거나를 불문하고 많은 부수를 원했다.¹⁰⁴⁾ 그러나 시문집은 柳根이 일찌기 대제학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의 시문을 뽑아 아무렇게나 쓴 책으로 한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寫字官을 시켜 잘 베껴서 주게 하였다.¹⁰⁵⁾ 같은 해(1614)에 四聲通解와 資治通鑑綱目이 반사되었다.¹⁰⁶⁾

광해군 7년(1615)에는 書籍校印都監에서 종이를 도둑맞았다. 그 사실을 보고하는 계문에서 春秋四傳, 東文選 등이 인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⁷⁾

광해군 11년(1619)에는 武定寶鑑, 繢武定寶鑑의 간행을 찬집청에서 계문하

102) 上揭書, p. 29

103) 上同, 3年 8月 壬申, “遼廣都御史楊鎬 求其經略朝鮮時 遺愛碑頌詩文 王命禮曹 別立頌德碑于沙峴外 卽其文累本 且命群臣 廣述贊頌特 使大提學勘定 刊印五六卷 且以本國三次辨證奏文 弍其首以送之 楊鎬又求小板本數百 許之”

104) 上同, 6年 9月 戊午, “政院啓曰 卽者禮曹郎官權側來言 差官所求之中 最要東國詩文也 其意乃丘遊擊多南方文士 將送其處故 如是切求 且曰 其詩文或印本或寫本中 願多得以去云矣”

105) 上同, 6年 9月 戊午, “弘文館啓曰 丘遊擊求請東國詩文 戶曹判書臣柳根 曾爲大提學時 所抄東人詩文 只有亂草一件 依前例令寫字官繪寫以給 從之”

106) 韓國古書年表資料, p. 29

107) 上同, 7年 11月 戊子, “書籍校印都監啓曰 都監方印四傳春秋東文選等二大秩 已印及未印冊紙 數多積置 而本月初八日夜間 拔去鎖鑰 偷出進上冊紙百餘帖 此外亦有見偷物件 二冊已印件數則幸而得免”

(표 3) 간행 서적의 상황

書籍名	刊記	頒賜記	主題
皇華集		1608	文學
詩傳		1610 분장	儒書
內訓	命1610	1611	儒書
家禮諺解	1610 인출허락		儒書
樂學軌範	1610	1610	音樂
詩傳諺解	命1610	1613	儒書
儒先錄	命1610		儒書
書傳諺解	命1610		儒書
左傳	1611 인쇄중		儒書
高麗史	1612	1613	史書
奥地勝覽	1612	1613	地理書
龍飛御天歌	1612	1612	文學
中庸諺解		1612	儒書
論語諺解		1612	儒書
孟子諺解		1612	儒書
酸蠹方	1612		醫書
國朝寶鑑	命1612		史書
小學諸家集註	1612		儒書
攷事撮要	1613	1613	類書
大典後續錄		1613	政法書
大典續錄		1613	政法書
經國大典		1613	政法書
四聲通解		1614	儒書
資治通鑑綱目		1614	史書
春秋四傳		1615	儒書
東文選	1615	1623	文學書
武定寶鑑			政法書
續武定寶鑑		1623	政法書

여 허락을 받고 있다. 광해군은 이 책들을 속히 畫字官으로 하여금 한건을 謄書하게 한 다음 주자로 인쇄하고 본책은 다시 들여오도록 명¹⁰⁸⁾하였으나 이미 續武定寶鑑을 목활자로 하였기 때문에 武定寶鑑도 같은 목활자로 할 것을 주청하여 허락을 받고 있다.¹⁰⁹⁾

명나라 사신과 조선조 접대관의 칭화 시문집인 황화집은 광해군 원년(1609)과 13년(1621) 두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황화집이 이처럼 자주 간행된 것은 중국에서 온 사신들이 그 책들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¹⁰⁾

이상의 서술을 도표로 나타내면 〈표 3〉 같다.

VII. 결 론

광해군이 재위기간 중에 문예진흥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당을 광해군 즉위년(1608)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14년(1622)에 혁파되었다.

둘째, 산일된 서적의 복구를 위해 서적교인도감을 설치하였다.

셋째, 서적의 수집과 출판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후한 포상을 하였다.

108) 上同, 11年 4月 丙子, “撰集廳啓曰諸逆文書 幾盡撰出 逆 推案 當爲印出 而未及啓下故侍講院所藏續武定寶鑑 先爲印出 而元秩四冊中 一冊未具 武定寶鑑則元無所儲 廣覽不得 以此停後 聞弘文館所藏武定寶鑑及續武定寶鑑全秩 先王朝入內未下云 還下印出似當且逆 推案 遠爲啓下然後 可以連續印出 敢此稟 柳逆推案 已爲正書一本以進 (睿覽) 啓下後 當爲印出之意敢啓 傳曰依啓 諸逆若 印 則不可先印戊申逆書 更爲察啓 武定寶鑑 急令寫字官一件謄出 以鑄字印出 以本冊則還入(事察爲)”

109) 上同, 11年4月 戊寅, “撰集廳啓曰... 武定寶鑑及續武定寶鑑還下事 已爲蒙允 必須速下 然後 不廢工役矣 (以鑄字印出事 則續武定寶鑑三冊一百八件 已以木字印出 不可異同 仍用木字無妨 敢啓) 傳曰矣啓”

110) 上同, 元年 4月 癸亥, “廷龜曰 郭委官稱爲御使 驗票而求書冊 禮曹已爲啓辭爲覓給 不知以唐本給之矣 以我國冊給之乎 王曰 皇華集則是我國冊也 其餘則皆是天朝之書 何以求之耶 尚容曰 非求唐本耶 我國之冊 紙好而善印 必以此求之耶”

넷째, 주자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다수의 서적을 수집하고 출판하려고 노력하였다.

가) 수집의 방법은 자료 수집, 謄書, 購求, 出版, 貿來였다.

나) 자료의 수집은 실록을 비롯하여 각종 서적들을 편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각 가정집에서 소장하고 있는 日記, 朝報 등을 빠짐없이 거두어 들였다.

다) 謄書는 자료를 초보적이고 일차적인 방법으로 먼저 복본화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자료화보 및 자료의 분산 보존의 방법으로 등사하여 실록 봉안처에 두기도 하였다.

라) 購求는 국내 서적을 간행하려는 목적으로 완질이나 혹은 逸書까지도 구하였다.

마) 貿來는 국내에 없는 서적은 중국에서 구하도록 한 것으로 연행 사절단을 통해서 왕이 직접 무래 서적을 주문하기도 하고 연행 사신들의 자진 헌납을 받기도 하였다.

바) 貿來된 서적은 大明會典, 春秋四傳, 通鑑纂要, 杜氏通典, 玉海, 文選, 學海, 林居漫錄와 書名을 알 수 없는 서적이며, 무래 하고자 하였던 서적은 後漢書, 南北史, 金史, 元史, 太平御覽, 歷代名臣奏議로 밝혀졌다. 무래가 행해졌던 시기는 즉위년(1608)과 광해군 2년(1610), 3년(1611), 5년(1613), 6년(1614), 7년(1615)이다.

사) 편찬된 서적은 新增東國與地勝覽, 東醫寶鑑, 簡圖醫方論脈訣集成, 酸疫新方, 新刊補註黃帝內經素文, 東國新續三編行實圖으로 醫書類가 많으며 天文地理類의 편찬도 고려하였다.

아) 서적을 편찬했던 시기는 광해군 3년(1611)에 1종, 광해군 5년(1613)에 4종, 광해군 7년(1615)에 1종이며 편찬시기는 확실하지 않아 반사된 시기로 볼 때 광해군 10년(1618)이 1종, 광해군 15년(1623)이 1종이다.

자) 간행된 서적은 內訓, 樂學軌範, 詩傳諺解, 左傳, 高麗史, 與地勝覽, 龍

飛御天歌, 詩傳, 中庸諺解, 論語諺解, 孟子諺解, 酸瀘方, 國朝寶鑑, 小學諸家集註, 殇事撮要, 大典後續錄, 大典續錄, 經國大典, 春秋四傳, 東文選, 武定寶鑑, 續武定寶鑑, 皇華集으로 대개가 조선 조에서 일반 사대부들이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적들이며, 인출을 허락받은 것은 家禮諺解이다. 주제별 분포는 儒書類가 13종으로 가장 많고, 政法類가 5종, 史書類가 3종이고 文學類가 3종, 醫書類, 音樂類, 類書類, 地理類가 각각 1종이다.

- 차) 서적이 간행되었던 시기는 광해군 즉위년(1608)이 1종, 2년 (1610)이 6종, 광해군 3년(1611)이 1종, 광해군 4년(1612)이 6종, 광해군 5년(1613)이 1종, 광해군 7년(1615)이 3종이며 인출시기가 확실하지 않으나 실록기사나 내사기의 연대에서 추정되는 시기는 광해군 2년 (1610)이 1종, 광해군 4년(1612)이 3종, 광해군 5년(1613)이 3종, 광해군 6년(1614)이 2종. 광해군 15년(1623)이 2종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revival of learning policy of Kwang-Hae-Kun

Hye-Young Kang*

〈Abstract〉

During his reign, Kwang-Hae-Kun has done various works to promote literature and book acquisition. Among those works i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office called 'Tok Seo Dang' as he was enthroned in 1608, though it was demolished in 1622. And 'Seo Chuk Kyo In To Kam' was built to recover the scattered and lost books. He encouraged the people to collect and publish books by rewarding those who were engaged in a sort of library works.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was to collect rare and essential resources, seek the material even in China and publish them using metal printing type. They even sought the diaries and newsletters which the individuals kept at their house.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first copied and then kept in 'Shilok' shrine.

Among the imported books are *Dae Myung Hoi Chon*, *Chon Choo Sa Chon*, *Tong Kam Chan Yo*, *Du Si Tong Chon*, *Ok Hae*, *Mun Seon*, *Hak Hae*, *Lim Geo Man Rok* and some were without titles. Majority of the compiled materials were medical books and geographies like *Shin*

*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onbuk National Univ.

Cheung Tong Kuk Yeu Chi Seung Ram, Tong Eui Po Kam, etc.

Because of this strenuous effort, they were able to collect and retrieve lots of books and materials between 1608 and 1623. Majority of the published books were of Confucianism(13) which were followed by Political and Legal items(5), Historical documents(3), literature (3), etc. Regarding our library history, one should never forget Kwang-Hae-Kun's significant and remarkable contribution to it.